

① 원천징수기간 년 월 일 ~ 월 일까지

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

1. 원천징수의무자

② 금융회사등	③ 사업자등록번호	④ 주소 (본점소재지)
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

2. 소득자

⑤ 성 명	⑥ 주민등록번호	⑦ 기본공제 신청금액	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	기타 금융투자소득
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3. 원천징수세액

구 분	금융투자 소득금액			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	⑫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금액 (⑩ - ⑪)	원 천 징 수 세 액											
	⑧ 금융투자소득금액 (결손금)	⑨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 (결손금)	⑩ 공제 전 금융투자소득금액 계 (⑧ + ⑨)			⑬결정세액			⑭기납부세액			⑮차감징수세액					
						소득세	지방 소득세	농어촌 특별세	소득세	지방 소득세	농어촌 특별세	소득세	지방 소득세	농어촌 특별세			
일반	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																
과세	기타 금융투자소득																
분리	9% 세율																
과세	14% 세율																
	비과세																
	ISA계좌 중도해지등 계																

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

⑯ 계좌번호	⑰ 과세구분	⑱ 금융투자소득 구분	⑲ 국내/국외	⑳ 통화코드	㉑ 증권표준 코드	㉒ 금융투자 상품명	㉓ 양도 등 수량	㉔ 양도가액 (분배금액)	㉕ 취득가액	㉖ 양도비등 필요경비	㉗ 금융투자 소득금액(결손금) (㉔ - ㉕ - ㉖)

위의 원천징수세액(수입금액)을 정히 영수(지급)합니다.

세무서장 귀하

징수(보고)의무자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이 서식은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으로 계좌보유자별로 작성합니다.

1. ① 원천징수기간란: 원천징수 대상 기간을 적습니다[예: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(1.1~6.30, 7.1~12.31) 또는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].
2. ② 금융회사등란: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.
3. ③ 사업자등록번호란: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4. ④ 주소(본점소재지)란: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적습니다.
5. ⑤ 성명란: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되,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.
6. ⑥ 주민등록번호란: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,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7. ⑦ 기본공제 신청금액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자의 “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또는 변경·추가 신청서” 상의 신청금액을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습니다.
8. ⑧ 금융투자소득금액(결손금)란: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(일반과세)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금액: 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⑰ 과세구분 코드가 “01” 인 ⑳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 - (일반과세)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 : 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⑰ 과세구분 코드가 “02” 인 경우 ㉑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 - (분리과세) 9% 세율 금융투자소득금액: 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⑰ 과세구분 코드가 “03”, “04”, “05”, “07” 인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적되,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이 (-)음수인 내역은 합계하지 않습니다.
 - (분리과세) 14% 세율 금융투자소득금액: 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⑰ 과세구분 코드가 “06” 인 ㉓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되, ㉓ 금융투자소득금액이 (-)음수인 내역은 합계하지 않습니다.
 - (비과세) 금융투자소득금액: 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⑰ 과세구분 코드가 “08” 부터 “14” 까지에 해당하는 ㉔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 - (ISA계좌 중도해지등) 금융투자소득금액: 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⑰ 과세구분 코드가 “19” 인 ㉕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⑨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(결손금)란: 「소득세법」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상반기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
 - 「소득세법」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상반기의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적되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3조의2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기본공제 소득구분에 따른 해당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도록 적습니다.
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10.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란: ⑧ 금융투자소득금액(결손금)과 ⑨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(결손금)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.
11. 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란: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큰 경우 ⑦ 기본공제 신청금액을 적되, 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습니다.
12. ⑫ 공제후 금융투자소득금액란: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13. ⑬ 결정세액란: 소득세는 ⑫ 공제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(20%)을 곱한 금액(분리과세인 경우 9%, 14% 세율을 곱한 금액)을 적고, 지방소득세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3에 따라 계산(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%)한 금액을 적으며, 농어촌특별세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4. ⑭ 기납부세액란: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(원천징수)한 소득세, 지방소득세,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으며, 상반기에 소액 부징수한 경우 그 소액 부징수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습니다.
15. ⑮ 차감징수세액란: ⑬ 결정세액에서 ⑭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, 지방소득세, 농어촌특별세 세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16. 4.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: 계좌번호, 금융투자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,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이 다른 경우 금융투자상품(종목)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.
17. ⑯ 계좌번호란: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
작성방법

18. ㉓ 과세구분란: 「소득세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일반과세 및 분리과세, 비과세로 구분하고,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구분별로, 분리과세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적용 세율별로 구분하여 아래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.

구분	일반과세		분리과세					비과세						중도해지등(ISA) (§ 91의18㉔)	
	상장주식등 금융투자소득	기타 금융투자소득	뉴딜 펀드	공모부동산 펀드	세금우대 종합저축	투융자 펀드	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(ISA)	비과세 종합저축	재형 저축	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(ISA)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(조특법 § 14①)	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(조특법 § 16의4)	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(§ 88의4④)		기타
코드	01	02	03	04	05	06	07	08	09	10	11	12	13	14	19

19. ㉔ 금융투자소득 구분란: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별로 상세구분 코드를 적습니다.

구분	주식등(10)						채권등(20)					투자 계약 증권 (30)	집합투자기구(40)				파생결합증권(50)						파생상품(60)						
	상장			비상장			국 채	지 방 채	특 수 채	회 사 채	외 국 채		기 타	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	그 외	E L W	E L S	D L S	E T N	골드 뱅크	실버 뱅크	기 타	선 물	선 도	스 왓	콜 옵 션	풋 옵 션	C F D	기 타
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	K-OTC 거래		그 외																							
코드	11	12	13	14	15	19	21	22	23	24	25	29	30	41	49	51	52	53	54	55	56	59	61	62	63	64	65	66	69

20. ㉕ 국내/국외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69조의2에 따른 국외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 “9” 로 적고 그 외는 “1” 로 적습니다.

구분	국내	국외
코드	1	9

21. ㉖ 통화코드란: 국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발행국가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통화코드를 적습니다(예 USD, CNY 등).

22. ㉗ 증권표준코드란: 한국거래소(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)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,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.

※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(ISIN코드)를 적으며,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

23. ㉘ 금융투자상품명란: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(증권명, 종목명 등)을 적습니다. 상품명미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
24. ㉙ 양도 등 수량란: 양도등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(주수, 좌수 등)을 적습니다.

25. ㉚ 양도가액(분배금액)란: 양도(분배)한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 구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.

- 주식등, 채권등, 투자계약증권소득: 해당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
- 집합투자기구소득: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
- 파생결합증권소득: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
- 파생상품소득: 소득세법 제87조의16에 따른 파생상품소득금액

26. ㉛ 취득가액란: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되,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- 주식등, 채권등, 투자계약증권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
- 집합투자기구소득: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실제 매수가격 등, 매수시 기준가격 등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0조의17에 따라 계산한 매수가격의 합계액
- 파생결합증권소득: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실제 매수가격 및 매수시 기준가격 등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0조의19에 따라 계산한 매수가격의 합계액
- 파생상품: 공란으로 둡니다.

27. ㉜ 양도비등 필요경비: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소득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.

- 주식등·채권등·투자계약증권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등과 양도비 등을 합한 금액
- 집합투자기구·파생결합증권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 등의 합계액
- 파생상품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69조의11제4항에 따른 비용

28. ㉝ 금융투자소득금액(결손금)란: ㉚ 양도가액(분배금액)에서 ㉛ 취득가액 및 ㉜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